

주 의 사 항

1.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주소와 취업중인 사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대여하거나 이종 취업을 하게 되면 같은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4. 국가기술자격이 취소·정지된 자는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자격번호

성명 정수영

자격종목 0502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생년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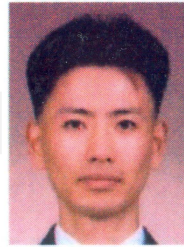
주소

합격연월일

교부연월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소정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변 경 사 항

년월일	변 경 내 용	확 인

비 고

위 자격증의 진위확인인 공단 홈페이지(Q-net.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대표전화 1644-8000)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 주소지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121-757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0-4